

선	기관의 장
람	



제 844 호
2008년 12월 30일 화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8 -1457호 2009년도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열람공고 ...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8 -1459호 무주부동산 공고 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8 -1464호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5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8 -75호 2009년도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6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8 -7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0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8-1457호

2009년도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열람공고

2009년도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별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결정되어 세부사항에 대한 열람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3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아 래 -

1. 열람내용 : 2009년도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2. 열람기간 : 2009. 1. 1 ~ 2009. 1. 31까지
3. 열람장소 : 남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4. 열람문의 : 032) 453-240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8-1459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 장관**위 처분청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8)

1. 공고기간 : 2008. 12. 30 ~ 2009. 06. 30 (6개월간)
2. 신고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영재정과 (전화 032-453-2274)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차례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	비 고	
				등기부	토지대장
1	인천 남동구 장수동 184-10	답	149	미등기	추원만길
2	인천 남동구 운연동 321-3	도로	3	미등기	인장부교
3	인천 남동구 남촌동 340	전	274	미등기	권장녀
4	인천 남동구 도림동 99	묘	340	미등기	노인수
5	인천 남동구 도림동 산45-2	임야	1,388	미등기	조선신탁
6	인천 남동구 수산동 산9-3	임야	496	미등기	박진숙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8-1464호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1. 인천도시계획(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 및 고시 【인고 제1994-56호 (1994.04.26)】 되고 사업시행인가 【인공 제1997-193호(1997.06.25)】 된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환지 처분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우리 구 도시개발과(☎453-298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며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380번지 일원
3.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4. 시행기간 : 1997. 6. 25. ~ 2008. 12. 31
5. 환지처분면적 : 427,522.6㎡
6. 환지처분내용
 - 각 필지별 신지번, 지목, 면적, 지적도면 확정 및 청산금 결정 등
7. 기타사항
 - 본 환지처분 공고로 인하여 종전토지 공부상의 지번, 지목, 지적은 환지처분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의 공부 발급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며 일정기일이 소요됩니다.
 -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은 우리 구에서 정리할 것이나, 청산금 징수(납부)대상 토지는 청산금 납부 즉시 정리됩니다. 또한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대상 토지에 결정된 청산금은 별도로 통지할 것이며, 교부금은 본인 청구에 의거 우리 구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8. 관계도서 : 개재 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8-75호

2009년도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I. 2009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금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 ①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 ②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 ③ 경과년수별 잔가율
- ④ 가감산특례(가산대상 및 가산율, 감산대상 및 감산율, 특정건물에 대한 가산율)
- ⑤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부록〉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남동구 세무1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Ⅱ. 200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량(8종 42,812건, 1.2% 인상)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시가표준액 ④과표적용요령 ⑤산출예시

나. 기계장비(30종 9,607건, 0.3% 인상)

①정의 ②종류 ③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시가표준액
⑤적용요령 ⑥산출예시

다. 선박(135건, 0.4% 인상)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공기(2종 151건, 0.4% 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

마. 시설물(7종 1,187건, 10.7% 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9종 383건, 0.3% 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사. 입목(23건, 동결)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조사방법 ⑤적용요령 ⑥시가표준액

아. 어업권(198건)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적용요령 ④산출예시 ⑤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자. 광업권(159건)

①용어정의 ②대상 ③용어해설 ④적용요령

차. 회원권(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 (1,930건)

①용어정리 ②종류 ③시가표준액표

2. 세부결정사항

남동구 세무1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8-7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0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0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032-453-2993), 건설과 도로시설팀(☎032-453-272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2. 3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결정(변경)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	9~12.5	국지도로	1,458	중1-180	소2-16	일반도로	-	경고277호('77.10.11)	
변경	소로	2	10	9~12.5	국지도로	1,458	중1-180	소2-16	일반보행	-	-	

○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10	소로 2-10	· 일부구간 선형변경	· 지적현황측량을 반영한 일부 구간 도로선형조정

3. 지형(결정)도면 : “별 첨”(게재생략)